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영합리화계획에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 추가〉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10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경영합리화계획에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 추가	2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3. 11.

다. 회부연월일 : 2025.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영합리화계획에는 우체국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 중 일부는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기존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체국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외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경영합리화계획에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 추가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① (생략)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우체국의 <u>설치·폐지</u> ,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 <u>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의 조정</u>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사항

- 현행법 제6조¹⁾에 따르면 경영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 ① 경영합리화의 목표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② 우체국의 설치·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 ③ 우정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④ 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그런데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혁신도시²⁾ 중 일부는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기존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혁신도시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된 경우 주민들에게 혁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우편사무 등은

1)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합리화의 목표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의 설치·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정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혁신도시 정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복수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혁신도시 소재 우체국의 관할구역 현황은 아래와 같음.

<복수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우체국의 관할구역 현황>

혁신도시명	관할구역	우체국명	우정청명
부산혁신도시	부산 영도구	부산영도우체국	부산지방우정청
	부산 남구	남부산우체국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우체국	
충북혁신도시	충북 진천군	진천우체국	충청지방우정청
	충북 음성군	음성우체국	
전북혁신도시	전북 전주시	동전주우체국	전북지방우정청
	전북 완주군	완주우체국	

자료: 우정사업본부(2025.3.)

○ 이에 개정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수립하는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계획에 우체국의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기존에 설치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이므로 입법 목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경영합리화계획에 우체국의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하여는 현행법 제7조³⁾ 및 「우정

3)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업본부 직제」(대통령령)제27조4)에서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등에 관하여 본부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정사업본부 현업 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5)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우정청장에게 재위임).

○ 이와 같이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 등을 위해 법령 으로부터 위임받아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범인 「우정사업법」 제6조(경영합리화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법안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경영합리화계획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지역의 상황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현행법령과 같이 지방우정청장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우정사업본부 직제(대통령령 제35335호)

제27조(소속관서) ① 지방우정청장 소속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두고,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에는 국장을, 물류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③ (생략)

④ 소속관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본부장이 정한다.

5)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우정사업본부 훈령 제955호)

제2조(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등) ① 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과 같고, 위치 및 관할구역은 청장이 정하며, 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의 직급 조정 및 총괄국 설치여부는 청장이 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현행법 제6조제2항제3호의 “우정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을 근거로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2021~2023년)⁶⁾의 중점 추진 과제에는 “보편적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대국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체국 창구망 운영체계 정립”을 포함하였고,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2023~2025년)⁷⁾에는 “경영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하도록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추진(탄력적 조직·인력 운영)”을 포함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같이 현행법에 근거하여도 경영합리화계획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법률 개정보다는 현행 법령 하에서 운영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것임.⁸⁾

- 종합해 보면, 개정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복수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혁신도시에서 주민 생활권역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만, 우체국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6) 202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

7) 202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

8) 우정사업본부 의견: 이미 경영합리화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실익이 적음.

따라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영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은 개정실익이 낮다는 입장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경영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국민불편 해소 및 개정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35

※ 참고자료 1. “우정사업 경영합리화계획” 관련 법령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합리화의 목표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의 설치·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정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6(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 ① 본부장은 그 임기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2. “우체국의 관할구역 지정” 관련 법령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우정사업본부 직제」(대통령령 제35335호)

제6장 지방우정청

제27조(소속관서) ① 지방우정청장 소속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두고,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에는 국장을, 물류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체국장 소속으로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둔다. 다만,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장 소속으로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둘 수 있다.

③ 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우편집중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물류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속관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본부장이 정한다**.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우정사업본부 훈령 제95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우편집중국·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사무분장·명칭·위치·관할구역·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제2조(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등) ① 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과 같고, 위치 및 **관할구역은 청장이 정하며**, 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의 직급 조정 및 총괄국 설치여부는 청장이 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참고자료 3. 우체국 설치기준 및 신설 프로세스

1. 설치기준

- 신도시 등 우정 수요 지역에 대해 도시 규모, 인근 우체국망 설치·운영 현황, 인근우체국 우편물량, 우편물 배달 거리, 공무원 정원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 결정

<우체국(창구국) 신설 시 인근국과 최소 배치 거리기준>

배치기준	서울시	대도시	일반시	읍·면
인근국과 거리(km)	1.6	2.0	2.3	-

2. 신설 프로세스

- 지역의 우체국 신설 수요에 대해 소관 지방우정청과 본부에서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

지역주민 등 우정 수요 제기 → 지역 총괄우체국에서 지방우정청에 우체국 신설 검토 요구 → 지방우정청에서 우체국 신설 필요성 검토(설치기준 관련 사항 검토) → 우체국 설치 필요성 의견 본부 제출 → 지방우정청의 우체국 신설 요구에 대해 타당성, 시급성 등 검토 → 관련 예산 편성 및 정원확보 → 우체국 신설

3. 신도시 등 우체국 설치 후 관할구역 조정 사례

지 역	설치 전 배달국	설치 후 배달국
부산 연제구	동래우체국	부산연제우체국
서울 금천구	서울금천우체국	서울구로우체국
서울 강북구	서울강북우체국	서울도봉우체국
음성 맹동면·대소면	음성우체국	음성동성우체국
대전 서구	대전유성우체국	대전둔산우체국
청주 흥덕구	청주우체국	서청주우체국
홍성 홍북읍	홍성우체국	홍성내포집배센터
포항 흥해읍	포항장량동우체국	포항흥해우체국
창원 북면·동읍·대산면	창원우체국	창원감계우체국
화성시 목동, 신동, 장지동, 산척동	화성동탄우체국	남동탄우체국
화성시 남양읍 등 7개 지역	경기남양우체국	화성우체국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양감면	화성우체국	화성향남우체국
양주시 양주동, 회천동, 옥정동, 은현면, 남면	의정부우체국/동두천우체국	양주우체국